

1. 수련거리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을 필두로하여 향후 10년간의 청소년육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골격을 명시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부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수련활동으로 개념화되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수련활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련거리, 수련터전 및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수련활동의 전체 운영체계 속에서 양성, 확대 보급되어 오고 있다. 1996년 현재 수련거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각 수련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사업화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련활동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의 경우 총 432개소(자연권 213개소, 생활권 189개소, 유스호스텔 37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시설 등 앞으로도 적지않은 시설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이끌어줄 지도자의 경우 일정한 자격연수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지도사가 시설별로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련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보유한 지도자들이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수련활동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토록 명시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수련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은 학교의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다. 그런데 수련활동은 수련거리, 수련시설 및 지도자 양성 등 3요소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확대 시행되어 매년 청소년의 참여면에서 중

대되고 있지만, 운영면에서 다소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수련활동의 개념적 추상성과 실체의 부재에 대한 지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실적 인정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는 등 개념이 실체적으로 규정되고, 학교교육 과정에 수련활동이 명시적으로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우상일, 1996:41). 수련활동의 실체적 규정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현재 학교교육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련활동의 개념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의 범위와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상에서는 수련활동을 ‘청소년들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청소년 봉사활동을 수련활동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수련활동 개념과 제를 같이 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특별활동의 하위개념으로 단체활동을 사용하고 단체활동 가운데 야외수련활동만을 수련활동으로 파악하는 등 야외교육 활동의 총칭으로 간주하고 있다(오명식, 1997:90). 청소년 봉사활동은 수련활동과 구별되어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수련이라는 이름하에 각급학교에서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야영장, 간이야영장, 야영협력학교를 비롯하여 문체부 등록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수련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 야영수련활동은 1994년 2백5십만명이 참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약 3십만이 늘어난 2백8십만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1996년에는 8월까지만으로 2백2십만이 참여하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참조:오명식, 1997:101).

청소년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외활동 중심의 수련활동 범위 설정은 청소년 기본법 상의 수련활동 시책의 활성화에 적지않은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전체 학생 청소년 가운데 야외수련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0%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도적으로 야외수련 시간을 늘려 주거나 교육과정 상에 명시적으로 수련활동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학교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실시되는 야외수련활동의 제도적 고리에 주목한 결과, 수련활동의 개념과 성격은 그 자체로 혼용되거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소년 수련활동은 집단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또는 지속, 반복, 장기적 활동인가 아니면 반복성 보다는 일회적 성격을 띠는 것인가에 대한 무성한 논의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 한승희 외, 1994 : 5). 이러한 난맥상은 과연 수련활동이 집단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참가 활동을 기록 관리토록 하는 교육개혁위원회 제안의 기본 취지, 나아가 원천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수련활동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수련활동의 개념적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혼란에 더하여 수련거리, 시설 및 지도자와 관련된 수련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각종 제안들은 각각의 부문별 관련 기구나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질적 개선에 모아지고 있다(참조:엄지용, 1994). 첫째, 수련거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에서 각 교과목 별로 국가 검인정 제도를 활용하여 각 과목별 내용과 범위 및 수준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련활동에서도 수련거리를 활동 소재나 주제별, 또는 활동영역별 내지는 수준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련거리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련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청소년 자신들의 문화 공간이

나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기본적인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수련시설의 증설 확보에 대한 요구이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수련시설에 대한 지정 육성과 등급제에 대한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일부 지나친 유치경쟁에 의해 거대화되어지는 경향에 대한 우려와 현재의 시설 활용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시설 수량이 과포화 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참조:지석환, 1996).

셋째, 수련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양성의 경우 현재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자체가 현장에서 수련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법 중심의 양성과 일반적인 청소년육성 업무의 수행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양성 운영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적지않다.

결국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많은 지적이나 제안들은 절대적인 청소년의 수련시간 확대와 이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상의 수련활동 시간 편성, 수련거리, 시설 등 수련활동의 부문별 평가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차등 지원 육성을 통한 수련활동의 전문화 내지는 세분화에 대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수련거리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도 이런 제안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우선 청소년에게 질 좋은 수련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수련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런 기대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육성

이 교육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면서 육성과 교육 두 영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 육성을 대등한 관계로 위치시킨 까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이라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국가의 정책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 교육의 대상으로서 학생청소년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전체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책적 방향이 당연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간의 청소년을 위한 제도교육이 소위 교육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는 인간상에 접근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른 정책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 문제상황은 교육만능적 사고의 팽배와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사회의 기피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소년교육과 육성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교육은 청소년의 학업활동으로써 지식과 정보습득 및 기초적인 덕성과 체력함양에 목표를 두고 청소년육성은 수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한 덕성과 체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 교육과 육성의 분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교육은 학교중심의 교과과정에 의해 정해진 학습과목과 시간에 따라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청소년육성은 사회와 자연을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련활동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별개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나아가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체제형성 노력은 교육과 별개로 설정된 목표와 대상, 참여형태, 활동내용과 수단 및 지도자 형태 등의 구조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원리와 형태를 시도한다. 우선 이들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궁극적인 육성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한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수단적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크게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지원, 교류지원 등 3가지로 나누어,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되는 활동프로그램(교육=교과내용), 이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교육=교사), 활동을 매개하는 장소로서의 단체나 시설(교육=학교 및 기타 부대시설)을 체계적으로 완비하는 것을 육성의 조건으로 한다.

결국 청소년 육성체제의 독자적인 체계화 노력은 근대사회에서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띠고 있는 교육의 비인간적 관계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의 조직과 구조를 원용하여 수련활동에서의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계통성과 통합성의 확보,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 조직원리로서 효율적인 합리성을 성공적인 육성의 원리로 간주한다(참조:함병수 외, 1991:87-89). 또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얼마나 많은 청소년관련 단체와 시설을 확보하느냐, 얼마나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환경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육성체제의 제도화를 승부의 관건으로 삼는다(참조:이용교, 1994:34-39).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수련활동은 교육영역의 학업활동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수련거리는 수련활동의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명시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거리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수련거리는 수련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행위와 실천을 전제로 한 덕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수련거리는 마치 학교의 교과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어, 수학, 영어 등과 같이 분류되고 사회적 인정 형태인 점인정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 제공됨으로써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육성을 위한 덕목별로 영역화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사회적 인정 형태로 수련거리 인증제를 도입함

으로써 청소년에게 양질의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수련거리 인증제 도입의 문제점

수련거리 인증제도는 수련활동의 활성화와 양질의 수련활동 보장을 위한 수련거리의 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제안되어지고 있지만, 그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련거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영역과 내용이 분명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그 분류는 최소한 상호배타적인 목표와 결과를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련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영역별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련활동은 곧 수련거리로서 거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 수련활동영역 분류 비교

1991	1992	1993	1994
1) 체력단련활동 2) 정서함양활동 3) 자연체험활동 4) 예절수양활동 5) 사회봉사활동 6) 전통문화활동 7) 복합수련활동	1) 스포츠활동 2) 문예활동 3) 봉사활동 4) 전통문화활동 5) 과학활동 6) 예능활동 7) 자연체험활동 8) 예절수양활동	1) 스포츠활동 2) 문화예술활동 3) 봉사활동 4) 전통문화활동 5) 과학활동 6) 자연체험활동 7) 예절수양활동 8) 자아개발활동	1) 자연체험활동 2) 스포츠활동 3) 문화활동 4) 봉사활동 5) 예절활동 6) 전통문화활동 7) 인간관계수련활동 8) 자아개발활동 9) 과학활동 10) 캠프활동
‘한국청소년 기본 계획’ : 체육청소년부(1991.6)	‘청소년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청소년수련활동 실태조사’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기본계획’

현재 수련활동과 수련거리는 개념적 수준에서 구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련활동은 수련거리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현실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련거리에 대한 인증은 곧 수련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인증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련활동이 영역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련거리에 대한 인증은 자칫 획일화된 활동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의 덕성함양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서 최소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흥미와 교육성 및 안정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련활동은 지도자의 전문적 자질과 활동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이 변형가능한 융통성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거리에 대한 인증제는 이런 변형가능성이나 다양성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련활동 영역은 당초 청소년기본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입안시에 고려되었던 덕목별 활동 분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런 변화는 수련활동 영역을 덕목별로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통합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활동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또한 특정영역의 활동이 어떤 구체적인 덕목만을 함양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연관된 덕성이 함양되어지는 고유한 미분화된 영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인식이 충분히 전제되어 있지 않고 수련활동 영역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최소한의 사회적 공통분모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련거리의 인증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방해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염려마저 있다.

둘째, 수련거리는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련거리의 단위는 축구, 농구 등 체력단련을 위한 스포츠 종목이나, 꽃꽂이, 피아노 강습 등과같은 취미개발 활동에서부터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야외수련활

동과 같은 복합적 수련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크기와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수련거리 영역과 크기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표 2>의 수련거리 세부영역 분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토탐사활동과 같은 복합수련거리에서부터 단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활동내용마저 자연체험활동과 정서함양활동을 위한 수련거리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청소년기본법 상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이를 운영하기 이전에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청소년기본법 제26조 3항, 동시행령 제33조 1항), 등록시의 구비서류의 일종인 시설일람표에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가능한 활동의 종류를 표시(동 시행규칙 제18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분류와 크기는 수련활동과 수련거리의 영역화와 실체의 인증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본법 체계내에서도 일관된 수련활동의 영역과 분류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영역의 수련활동을 어떤 단위의 형태로 어떤 기준을 통해 인증하기는 어렵다. 학교교육에서도 교과외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영역화하고 있을 뿐 특별활동을 구체적인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수련거리 세부영역 분류

영역	활 동 내 용
체력증진활동	①구기(축구,야구,농구 등) ②격투기(태권도,유도 등) ③수상(수영,스킨스쿠버 등) ④산악(등산, 스키 등) ⑤항공(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딩 등) ⑥생활스포츠(체조,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타기, 승마 등)
단 보건의생활활동 연 생활활동	안전 ①악물오남용 방지 ②성교육 ③비만예방 ④올바른 식생활 ①교통안전 ②응급처치법 ③화재예방 ④호신술 ⑤안전사고 예방 ⑥인명구조 ⑦폭력대처
정 감성계발활동 문 화예술활동 합 양 취미·특기활동	①문예기행 ②산사탐방 ③감수성훈련 ④삼림욕 ⑤참선 ⑥마인드컨트론클럽 ①문학(독서, 글짓기등) ②연극(연극만들기 및 관람등) ③영화감상 ④음악감상(작곡 및 음악회관람등) ⑤미술(회화감상, 조각등) ⑥무용관람 ⑦영상음악창조 ①사진촬영 ②만화 ③수공예(꽃꽂이,양초공예,목공예등) ④공작(모형비행기등) ⑤바둑 ⑥서예 ⑦악기연주(피아노,바이올린등) ⑧수집(우표,동전등) ⑨요리 ⑩낚시 ⑪레크리에이션
자 연탐구활동 자 연호연수련활동 체 험 자연사랑활동	①동굴탐사 ②천체관측 ③강탐사 ④해양탐구 ⑤갯벌탐사 ⑥지형탐사 ⑦조류관찰 ⑧식물관찰 ⑨야생동물관찰 ⑩지도만들기 ⑪자연사이해 ⑫기상관측 ①무인도 탐험 ②오리엔티어링 ③멧목타기 ④번지점프 ⑤산악자전거 ⑥철인경기 ⑦암벽등반 ①농작물재배 ②설내정원만들기 ③환경오염측정 ④새집달기 ⑤천연기념물관찰 ⑥동물기르기 ⑦야생화기르기 ⑧우리물고기 기르기
예 자기절제활동 전 생활예절활동 수 양 규범이해활동	①저축 ②가훈갖기 ③과우명만들기 ④생활용품 아껴쓰기 ⑤고전덕목익히기 ⑥가치관정립 ⑦효행 ①가정의례 ②가정생활예절 ③의생활예절 ④식생활예절 ⑤사회생활예절 ⑥다도 ①기초절서지키기 ②공중도덕지키기 ③관습 ④법이해 ⑤모의의회 ⑥모의법정
일손돕기활동	①농번기일손돕기 ②공공시설물청소 ③아이돌보기 ④우편물정리 ⑤간병보조 ⑥관광지안내
사 지도·상담활동 회 선·위문활동 봉 사 지역사회개발활동	자 ①포레상담 ②늘이지도 ③교통안전지도 ④목기지도 ①재해구호 ②장애인돌보기 ③고아원방문 ④불우이웃돕기 ⑤소년소녀가장자매결연 ⑥바자회 ①지역사회가꾸기 ②지역사회조사 ③지역홍보 ④지역행사지원 ⑤캠페인활동(폭력예방,교통안전 등)
전 민속예술활동 통 역사이해활동 문 문화비교활동 화	①탈춤 ②민속놀이(세시풍속) ③농악 ④판소리 ⑤사물놀이 ⑥전통공예 ⑦국궁 ⑧택견 ①향토민속조사 ②문화유적지답사 ③고궁탐방 ④박물관 견학 ⑤역사연극 ⑥역사인물기행 ⑦서원답방 ①향토음식만들기 ②전통생활용품알기 ③향토언어비교 ④각국전통문화비교

<표 3> 수련시설에서 실시가능한 활동의 종류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 영화 ○ 연극 ○ 춤 ○ 노래·연주 ○ 음악감상 ○ 문학발표회 ○ 전시회 ○ 강의 ○ 세미나 ○ 상담 ○ 소그룹활동 ○ 꽃꽂이 ○ 독서 ○ 서예 ○ 도예 ○ 다도 ○ 예법익히기 ○ 수예 ○ 요리실습 ○ 의상실습 ○ 어학실습 ○ 회화·조각 ○ 공작·공예 ○ 과학실험 ○ 컴퓨터실습 ○ 아마추어무선 ○ 사진촬영·인화 ○ 슬라이드제작 ○ 비디오제작 ○ 오디오실습 ○ 바둑·장기 ○ 고누·양기 ○ 전자오락 ○ 탈춤 ○ 사물놀이 ○ 차전놀이 ○ 그네 ○ 널뛰기 ○ 투호 ○ 기타민속놀이	○ 육상 ○ 축구·럭비 ○ 하키 ○ 배구 ○ 농구 ○ 야구 ○ 스포츠볼 ○ 탁구 ○ 테니스 ○ 배드민턴 ○ 사이클링 ○ 승마 ○ 양궁 ○ 국궁 ○ 조정·카누 ○ 요트 ○ 물러스케이트 ○ 빙상 ○ 스키 ○ 수영 ○ 사격 ○ 볼링 ○ 씨름 ○ 태권·궁후동 ○ 유도 ○ 복싱·레슬링 ○ 검도·펜싱 ○ 체조 ○ 미용체조 ○ 체력단련 ○ 족구·발야구 ○ 격구 ○ 실내축구 ○ 석궁 ○ 비치발리볼 ○ 트램폴링 ○ 게이트볼 ○ 라켓볼·스쿼시 ○ 크리켓 ○ 눈썰매 ○ 잔디썰매 ○ 잔디스키 ○ 스케이트보드 ○ 롤러블레이드 ○ 윈드크루즈	○ 야영 ○ 담력훈련 ○ 극기훈련 ○ 오리엔티어링 ○ 개척물제작 ○ 등산 ○ 암벽등반 ○ 산악자전거 ○ 행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 모터글라이딩 ○ 열기구타기 ○ 수상스키 ○ 보트타기 ○ 뱃목타기 ○ 씨핑 ○ 윈드씨핑 ○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모닥불집회 ○ 산책 ○ 낚시 ○ 해수욕 ○ 산림욕 ○ 야외요리	○ 생태계관찰 ○ 화초관찰 ○ 암석관찰 ○ 수목관찰 ○ 곤충관찰 ○ 조수관찰 ○ 어류관찰 ○ 천체관측 ○ 기상관측 ○ 영농(곡물) ○ 영농(원예) ○ 영농(과수) ○ 조수사육 ○ 어류사육 ○ 근로 ○ 유물관찰 ○ 자연사학습 ○ 고적답사 ○ 동굴탐사 ○ 무인도탐사 ○ 자연림탐사 ○ 환경학습

셋째,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수련거리 인증제는 특정 수련활동 공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 수련거리 중심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중심의 인증방법은 이미 수련시설의 허가와 등록요건으로 수련활동과 수련거리가 고려되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허가 내지는 인정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시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수련시설의 허가과 등록시에는 법률에 정한 일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사항에는 수련활동과 수련거리의 운영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련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서류로는 설치 운영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다. 설치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중 운영계획 부문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 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또한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으로는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6조 2). 수련시설의 운영기준(동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수련거리의 운영과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 교육, 기록의

유지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수련거리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련거리의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수련거리를 청소년수련원은 4종류 이상, 청소년수련관은 3종류이상, 청소년수련실은 1종류이상, 청소년수련마을은 3종류이상, 청소년수련의 집은 2종류이상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참조:영 제17조가 1996년 7월 30일 삭제되었음)

라.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실시 현황부

나. 수련활동 참여자 명부

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련활동기록부

특히 이러한 수련시설 운영기준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따로 행정처분(동 시행규칙 제23조)을 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즉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3차, 4차 위반시에는 각각 운영정지 7일, 15일, 1월의 행정처분일을 명기하여 다른 사항의 위반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시에 이미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요한 수련활동과 수련거리의 운영계획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따로이 수련거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인정내지는 규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 법인 내지는 단체

에서 허가과 등록시에 수련거리 인증을 받지 못한 수련활동이나 수련거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련거리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1996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수련거리 인증제의 도입은 추후 검토과제로 넘기고 대신에 우수수련거리 선정 지원의 형태로 반영하였다. 우수수련거리 선정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2)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의 2(우수수련거리의 선정 지원)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거리중 그 내용이 우수한 수련거리에 대하여는 우수수련거리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원 등에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수련거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련거리의 선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우수수련거리 선정 지원 제도의 법령화 의도는 수련거리 인증제가 가진 기본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현재 허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거리를 인정하면서도 수련거리와 수련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특성화하며 아울러 인증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프로그램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활동결과들을 어떤 형태로 기록 또는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로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등 부문별 확대 노력에 주력한 나머지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시설의 증설, 지도사의 양성 등은 각각 파편화되어 진행되어지고 있을 뿐 부문별 요소들이 청소년의 활동현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저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이 일회용의 단속적인 전시효과에 그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용성이나 그 성과의 검증이 결여되어서 청소년의 유동적인 심리와 교육적 효과를 잘 조화시키기 어렵다(강아장, 1996:89)거나,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운영방법이 대동소이해서 학생들이 식상하여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권복순, 1996:124)이라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하다. 즉,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한 중요성에 터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있다.

아울러 수련활동의 각 부문별 제도화가 상호 중복 내지는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지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청소년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크게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수련활동 시간의 확대와 부문별 제도화가 청소년들의 활동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염려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적의

난맥상은 결국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개념적 실체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수련활동이 정의되고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무엇이 수련활동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수련활동 전반의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선행하지 않은 채, 학교교육에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련시설 중심의 야외수련활동의 활성화에 제도적 초점을 맞추거나 수련활동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의 난맥상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행정적 편의주의식의 제도화 내지는 관련 전문집단의 자기이해 증식의 과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따라서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련활동 부문별 문제점 지적과 제도적 확대에 대한 검토보다는 현행 수련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전제로 전반적인 수련활동의 운영체제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종합적인 수련활동 운영체제의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즉 현재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에 터하여 수련활동을 실체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현행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체적 영역화와 활성화 방향

현행 수련활동은 실체적 범주로 구현하기 위해 운영형태별로 <그림 1> 과 같이, 단체 수련활동, 수련시설 수련활동, 사업형 수련활동 및 종합체계 수련활동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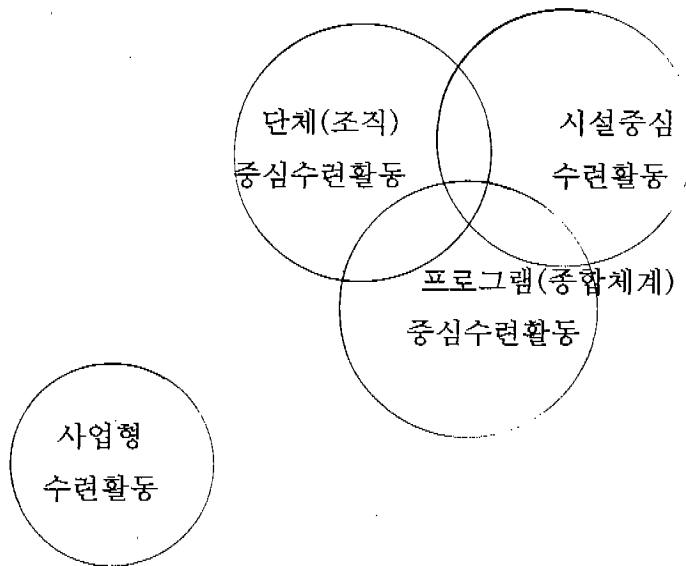
1) 단체 수련활동

단체 수련활동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등과 같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체의 고유한 설립목적과 조직을 바탕으로 가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형태의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운영형태의 것을 말한다. 단체 수련활동은 조직 자

체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수련활동에는 자생적이거나 특별한 법적·제도적 근거없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씨클, 클럽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청소년 각 단체는 각기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 활동양식이나 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고 활동의 주 대상에 있어서도 초·중·고·대학생, 근로청소년, 불우·비행청소년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은 크게 훈련활동, 연수활동, 국제교류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교육활동, 문화행사활동, 협력활동, 조직확대 및 강화활동,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 수련활동의 운영형태별 분류



○ 훈련활동 ; 훈련활동은 청소년단체의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내심을 함양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이다. 훈련활동에는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회, 야영활동, 연수회

○ 연수활동 ; 연수활동은 청소년들의 탐구력과 지적능력을 배양하며, 일반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및 지식을 넓히기 위한 활동으로서 각종 연구회나 세미나, 현장답사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국제교류활동 ;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케 하고, 국제협력의 정신 및 건전한 국가관과 세계관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단체의 회원들과 상호교류 및 국제회의의 참가, 시찰연수, 국제캠프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로 하여금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군으로 육성하는 주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 지역사회개발활동 ; 지역사회개발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과의 협력 및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과 나아가 애국심을 기르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근로봉사, 교육봉사 및 농촌봉사와 도시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인들의 선도 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의 발전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교육활동 ; 교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불우한 청소년들이 생활자립을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활동이다. 교육활동에는 사회교육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균형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문화행사활동 ; 문화행사활동으로는 각종 공연회, 발표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활동으로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능력의 발휘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 협력활동 ; 협력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며, 타인을 수용함으로써 자아를 확장시켜 포용력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에는 단체 자체내 각 클럽간의 연합모임, 타 단체 청소년들과의 회동모임, 성인클럽과의 모임, 혹은 지역사회내의 타 조직과의 모임 등이 있다.

○ 조직확대 및 강화활동 ; 각종 단합대회나 총회, 회원 친선대회 등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확대 및 강화활동은 각 청소년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확장시키며, 단체성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조직체의 경우와 대체로 흡사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보이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연맹 등 34개 단체와 17개의 비회원단체, 4개의 청협유관단체가 있는데, 청소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1천3백만여명의 전체 청소년 중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모든 청소년 단체에서 각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프로그램들이 과거 답습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청소년 단체별로 유사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단체 수련활동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2) 수련시설 수련활동

수련시설 수련활동은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수련시설 분류에 따라 생

활동권과 자연권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특정 시설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일정한 프로그램과 지도자들의 지도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수련활동을 의미한다. 즉,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 생활권 수련시설인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및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자연권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참여나 집단적 참여의 2가지 형태를 모두 포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학교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야외수련 또는 학생수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권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경우 정규 학교교육 과정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거나 활동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안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권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은 시설과 참여의 제한적 여건 등으로 주로 일회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다. 현재 자연권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은 거의 대부분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심신단련이나 극기훈련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도 시설에 따라 특성화 내지는 전문화되지 못하여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생활권 수련시설 수련활동의 경우 우선 청소년들의 참여형태 면에서 개인적 참여와 동아리 등과 같은 소집단 단위의 자발적 참여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생활권 시설로서의 공간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서 종합적인 체계를 가진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지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형태를 빌어 다른 시설과의 연계하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특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그밖에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적인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활동들도 수련시설 수련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다(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2).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 ②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⑤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 시설 ⑥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⑦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회관 ⑧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⑨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⑩ 시민회관·문화원·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다.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활동은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용시설을 어떻게 청소년의 수련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느냐는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특히 다양한 이용시설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3) 사업형 수련활동

사업형 수련활동은 일정한 시설이나 조직을 활동 거점으로 하기 보다는 현행 청소년 어울마당, 움직이는 수련마을 등과 같이 일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거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수련활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업형 수련활동의 경우 지속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회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소년 개개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형태가 보편적이다.

1996년 현재 정부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형 수련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 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시·도별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지역 대표시설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및 긍지 등 ‘6대 덕목함양 수련활동’, 무직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자연체험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근로청소년 문화 체육 대회, 마아칭밴드 경연축제 등 각종 경연대회, 민속 전승 놀이를 중심으로 학교등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움직이는 청소년수련마을’, 학업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또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레크레이션 또래 지도자 수련활동’,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풍물놀이 기회를 농촌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농촌청소년 풍물수련활동’,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이해 도모 및 가족유대 강화로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문제 해결도모를 위한 ‘청소년 가족캠프’, 그밖에 정부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업형 수련활동은 1회적 활동에 머무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수련활동으로서는 사업형 수련활동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련활동의 영역인 셈이다. 향후 사업형 수련활동은 그 범위를 이용 시설 및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종합체계 수련활동

앞의 3가지 운영형태의 수련활동이 주로 시설이나 조직 등 활동거점 중심 활동 또는 개인 보다는 집단활동 중심의 수련활동이며 단일 활동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데 비해, 종합체계 수련활동은 프로그램 중심 수련활동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일정한 수준의 성취한 체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그 자체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수련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단체, 시설, 사업형 수련활동은 의도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단일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활동인데 반해 종합체계 수련활동은 단일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시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여기에 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능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단체 수련활동도 일종의 종합체계 수련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특정 단체 가입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단일 프로그램의 활동들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는 결집성이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체계 수련활동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의 운영 형태 내지는 영역별 수련활동들은 일정 집단을 전제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단속성 내지는 일회적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수준별 형태에서 확대 활성화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련활동이 현재와 같은 집단 위주의 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의 개인적 도전이며 새로운 체험기회의 제공이라는 기본 성격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현재의 운영형태와 체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균형되고 비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여가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 발견과 성장, 자기 신뢰감의 형성, 인내와 책임감의 배양과 지역사회 봉사 등을 진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적 종합체계 수련활동 운영체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청소년 개개인의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학교중심 내지는 학교교육에 터한 수련활동의 운영구조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수련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단속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위주의 수련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일정 수준의 기능습득과 개인적 도달점의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련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수련활동 확대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모들의 경비 부담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대를 방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부모들이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에 참

여함으로써 초래되는 막대한 사교육비의 일부를 수련활동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합체계 수련활동은 현행 수련활동 영역들과 갈등을 야기하거나 중복되기 보다는 기존의 단체, 수련시설, 사업형 수련활동들은 각각의 고유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 종합체계의 한 영역이나 기구로서 포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4 가지의 수련활동 형태는 각각의 고유 특성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상호보완적 운영 내지는 혼합적 운영형태를 펼 수도 있다.

종합체계 수련활동의 주요한 한 예시로서는 현재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49여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딘버러 활동 프로그램(Edinburgh Award Scheme)’을 제시할 수 있다(부록 참조). 에딘버러 활동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일종의 수련활동 운영체계로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발견과 성장, 자신감, 인내심, 자신에 대한 책임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장려하는 균형있고 비경쟁적인 자발적 활동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기본구조는 봉사활동, 탐험 및 탐사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 등 4가지의 의무적인 부문으로 구성되며, 초급(동상), 중급(은상), 고급(금상)단계별로 나누어 독립 운영되고 각기 상이한 수준의 참여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14세이상 25세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참가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지역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프로그램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및 실행규약을 준수하는 선에서 해당국가의 문화와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그밖에 각 부문별 활동의 지도와 평가는 지역적 운영기구에 의해 승인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유경험자(지도자)에 의해 수행되며, 활동 과정과 성취수준은 활동기록부에 기록 보존되어 일정한 성취자격을 부여하는 준거로 활용된다.

에딘버러 활동프로그램은 물론 서구사회의 문화적 바탕위에 형성된 단체화되지 않은 일종의 프로그램 위주의 종합체계 수련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14-25세로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에딘버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운영구조와 체계는 한국사회에 적용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에딘버러 활동프로그램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규약을 준수하면서 한국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체계화하고 아울러 연령수준을 9-14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운영체계의 개발을 통해 이원화함으로써 한국적 실정에 맞는 종합체계 수련활동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2)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은 개념상으로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등에서 일정 자격을 소지한 지도자의 지도아래 각종 수련거리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는 개념적 진술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 수련활동의 참가현황을 조사한 결과(이광호 외, 1996)를 보면, 지난 1년동안 54.9%가 심신수련활동(극기훈련)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하며, 39.0%는 1번, 6.1%가 2번 이상 참가했다고 한다. 심신수련활동의 참가 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의 경우 62.9%가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비해 중소도시는 50.5%, 읍면지역은 42.7%만이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심신수련의 참가 장소로는 35.7%가 수련시설, 14.9%가 관광지였다. 이렇게 볼 때 대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의 일회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신수련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청소년의 반정도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학교에서의 야영 또는 캠프 참가실태를 보면,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한 청소년은 전체의 45.8%(1회 참가 : 39.4%, 2회 이상 : 5.4%)였다.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가기간을 살펴보면 44.6%가 1박 2일, 44.1%가 2박 3일정도 참가했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보면, 92.5%가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하며 7.5%(1회 : 4.9%, 2회 : 1.8%, 3회 이상 : 0.8%)만이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한다. 참가한 청소년의 경우 참여 기간은 보통 3박 4

일 이상(34.4%), 2박 3일(28.1%), 1박 2일(23.4%)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참여장소는 관광지(15.7%), 수련시설(12.4%), 청소년회관(9.0%) 등으로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낮았다.

개인적으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실태는 90.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며 1회 참가한 경우는 5.8%, 2회 참가한 경우는 2.1%, 3회 이상 참가한 경우는 1.6%이다.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참여기간을 보면 1일(37.5%), 1박 2일(22.2%), 3박 4일 이상(20.8%) 순이었다. 참여 장소를 보면 20.4%가 관광지였고, 학교(4.1%), 자연학습원(4.1%), 수련시설(4.1%) 등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을 앞에서 제시한 실체적 영역 별로 나누어 참여한 실태를 종합해 보면, 우선 단체수련활동의 경우 단체 가입 청소년이 15-18%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 정도의 청소년이 단체의 일원으로 각종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시설이나 사업형 수련활동의 형태로 전체의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일년에 3일 이내의 일정으로 1-3회 정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로는 학교, 수련시설, 관광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은 20%미만 정도인 셈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생활권 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고 한 청소년은 17.9%, 청소년수련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36.0%로써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자연권 시설의 경우 수련의 집이나 수련마을을 알고 있는 정도는 25.5%, 청소년야영장을 알고 있는 비율은 51.8%로 생활권 시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수련시설 이용도를 보면, 수련관의 경우 7.1%가, 수련실의 경우 19.9%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며, 수련의 집이나 수련마을은 9.2%, 야영장은 32.3%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여 수련시설의 이용도는 인지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거리들

이 개발 보급되어 왔고 수련시설도 점차 증설되어 적지 않은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시설의 이용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율과 수련시설 이용율이 조사결과상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을 곧 학교나 단체를 중심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의 일회적 활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극기훈련이나 심신수련활동 등 야외활동과 동일시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취미개발이나 체력단련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 꽃꽂이, 수예나 소프트볼 등 스포츠 활동들은 수련활동으로 인식, 간주되고 있지 않다.

특히 수련활동을 집단중심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잘 반영되어져 있다. 즉 청소년 수련활동의 목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전체 200%), 48.1%가 협동의식 형성, 45.3%가 사회성발달이 수련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목표라고 하여, 스트레스 해소(22.8%), 체력단련(20.5%), 자아개발(17.0%), 책임의식 형성(14.9%), 적성이나 특기발휘(14.1%) 등의 개인적인 요소에 비해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것과 관련된 목표를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련거리의 선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서함양활동(24.6%), 예절수양활동(23.6%), 사회봉사활동(18.3%)과 같은 전체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을 강조하여 사회적인 의미를 주는 수련거리를 체력증진활동(16.0%), 전통문화활동(9.1%), 자연체험활동(8.4%)과 같은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수련거리보다 더 중요한 활동이라고 선택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련활동은 앞의 <표 1>의 수련활동 영역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서함양활동, 심신수련활동 등으로 패키지화된 일종의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시설, 단체에서 지도사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활동만으로 인식되고 있다. 패키지화된 복합적 활동위주의 수련활동에 대

한 이해는 마치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안내자에 의해 인도되는 여행만을 여행으로 간주하고 개인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여행은 여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향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개발 보급된 89종의 수련거리의 현황(부록 1 참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련거리는 나라사랑 체험, 선현답사, 전통축제, 호연훈련, 외국문화이해 등 주로 주제중심의 수련거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수련거리는 어울춤, 컴퓨터와의 만남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소재활동 등도 개발되어 있어 수련활동의 개념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가 중심이 된 시설과 집단활동 위주의 수련활동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실제로 몇몇 친구들과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바라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학급이나 학년단위로(18.0%) 참가하기 보다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63.5%) 참가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대도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련활동 참가시기는 보통 학기 중의 평일이 44.4%로 가장 높았고, 방학기간이 38.8%, 학기 중의 주말이 16.8%였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5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봄(26.5%), 가을(12.0%), 겨울(3.7%)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는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시설을 확대하며 전문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등보다는 우선 수련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하는 통로와 체계에 대한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련활동 운영체계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수련활동의 평가나 인정 및 기록 유지관리와 같은 일은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련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보다는 수요자인 청소년 개개인의 입장에서 수련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활동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여하여 교과외의 피아노, 태권도, 서예 등

을 습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수련활동의 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인식과 제도적 틀의 확립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현재 수련활동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하여 수련활동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사고육비에 의한 활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종합센터’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도 있다.

부록 1 : 연도별 수련거리 개발 현황

Copyright © 2002 Nuri Media Co., Ltd.

개발연도	수련거리명	개발기관	비고
1992년 (7종)	문화권 탐방활동 바들산 체험활동 예술감상활동 독서교실활동 명절쇠기활동 도시 농촌교환봉사활동 역사연극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년 (14종)	국토탐사활동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민속놀이교실활동 호연훈련활동 자연농장활동 모의지방의회활동 수상훈련활동 지역사회명사만남활동 노래광장활동 놀이한마당활동 부모와 함께 하는 역할놀이 모의법정활동 환경캠프활동 역사인물기행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1994년 (10종+ 26종= 36종)	정신건강활동 환경살리기활동 가치관정립활동 바른시민생활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전통문화사랑방활동(5종) 우리 노래익히기 우리 악기익히기 우리 춤익히기 우리 국악익히기 우리 풍속익히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illegible]

개 발 년 도	수 련 거 리 명	개 발 기 관	비 고
1995	세계문화 비교체험활동 함께하는 지역공동체활동 나라사랑 체험활동 박물관 기행활동 남이되어보기 캠프 선현답사활동 한국의 강탐사활동	서울대 체육/교육연구소 서울대 체육/교육연구소 서울대 체육/교육연구소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1996 (17종)	국토사랑 배낭여행활동 전통예술창조활동 외국문화이해활동 가족유대강화활동 정보캠프활동 역사읽기활동 취미생활활동 문예사랑활동 창작마당활동 과학놀이활동 모험체험활동 산들탐사활동 영상매체활동 만화이해활동 통일광장활동 어울마당활동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 24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부록 2 : 종합체계 수련활동 예시

Edinburgh 활동프로그램

1. 개요

1) 프로그램 창설 경위 : 1956년 독일인 교육자인 Outward Bound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Edinburgh공작에게 건의하여 “The Duke of Edinburgh’s Award”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음

2) 프로그램의 성격 : 14-25세의 청소년들에게 흥미있는 개인적 도전을 위해 균형된, 비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여가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 발견과 성장, 자기 신뢰감, 인내, 책임감, 지역사회 봉사 등을 진작시키도록 돕는 활동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 ▷ Award의 포상기준은 참가 청소년들간의 경쟁적 요소 배제
- ▷ 참가 청소년의 인내심과 성취를 통한 개인적 향상 지향
- ▷ 참여는 자발적이며, 개인 참가자는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 중 자유선택권 가짐
- ▷ 성,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참가 청소년의 차별은 인정안됨

○ 프로그램 운영원칙

- ▷ 참가자는 14-25세 청소년에 한정
- ▷ 프로그램은 4가지 의무영역(봉사활동, 탐험 및 탐사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으로 구성
- ▷ Award는 3단계(금상, 은상, 동상)로 구분
- ▷ 수상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동상 6개월, 은상 12개월, 금상 18개월임

○ 프로그램 실행규약

- ▷ International Secretariat에 의해 제시된 실제 운영기준 준수
- ▷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
- ▷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성, 인종, 종교 및 개인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3) 프로그램의 특징 :

-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는 활동기록부의 발급과 더불어 시작됨
- 참가자가 Award 수상을 위한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을 경우 상을 수상하기 이전에 소정의 인정절차는 거쳐야 함. Award 운영주체마다 소정의 인정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음
- Award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 단체나 기관 등의 프로그램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음
- ※ 만약 청소년이 기존의 학교, 단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도 Award의 조건을 충족하는한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관과 Award의 2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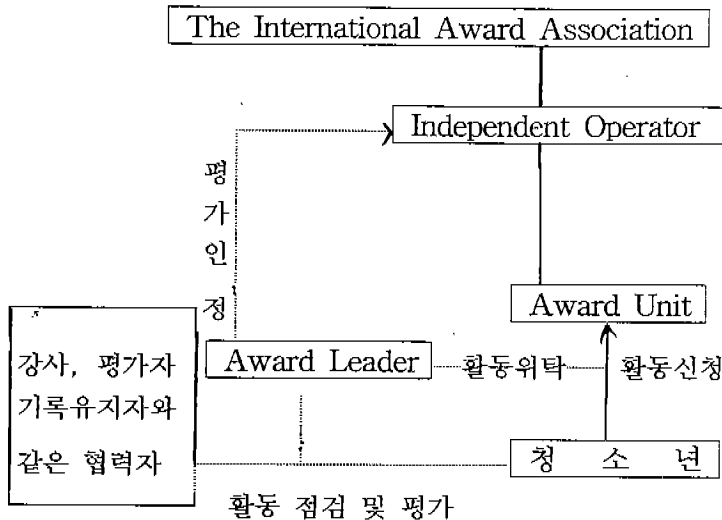
2. 운영체제

1) 기본 구조

- 국가별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National Award Authority가 있는 경우



- 국가별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National Award Authority가 없는 경우



2) The 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

- 창립 : 세계의 Award프로그램 대표자들이 호주에서 모여 모임을 갖고 National Award Authority들간 토의와 상호연락 업무의 수단으로 1988년에 결성되었음
- 기본원칙 및 실행규약
 - 성,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참가자간의 차별은 인정안됨
 - International Secretariat에 의해 제시된 바에 따라 실제 운영기준을 따를 것
 - 모든 점에서 Award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
 -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나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은 지킬 것
- 활동
 - 국제포럼 : 2-3년 마다 열리는 전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한 상담·토론의 장

-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 포럼의 중간에 개최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며 12개 지역의 대표로 구성됨

3) National Award Authority

- 목적 : 실질적인 각 국가별 프로그램의 운영을 조정하고 유지함
- 구성 : National Committee, Council 또는 Board of Trustee가 있음
- Operating Authority :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 곳에 위임될 수 있으며, OA는 청소년육성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의회가 제시하는 권장사항 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짐

4) Independent Operator

- 목적 : 국가 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와 같은 개별적인 기관이 허가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나라에 National Award Authority가 구성되기까지는 실제적인 운영자이며 National Award Authority가 운영되면 하나의 Award Unit로 재편됨
- National Co-ordinator : 여러 명의 IO가 있는 나라에서는 International Secretariat는 자신을 대표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National Co-ordinator를 임명할 수 있음
- 역할 : National Award Authority의 축소판으로 모든 활동을 관장함. 다만 모든 활동 자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연락할 International Secretariat에게 보고해야 함

5) 지역별 Award Authority

- 목적 : National Award Authority의 구성체로서 국가내의 지역별 단위임

- 역할 : 지역내의 Award Unit나 Award Leaders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함

6) Award Unit

- 목적 :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함
- 종류 : 학교, 지역단체, 청소년단체, 교회, 교도소 등 다양함
- 지역내에 위치한 다양한 Award Leaders의 도움으로 일을 수행함

7) Award Leaders

- 목적 : 청소년 개개인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원함
- 협력자 : 활동의 운영과 활동 내용을 강의할 수 다양한 성인들(자원자)이 필요하며 이들은 강사, 평가자, 기록유지자 등이 될 수 있음
- 역할
 - 청소년의 프로그램 선택과 개인적 목표 설정 지원
 - 선택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자원과 기구 선정 지원
 - 청소년의 발전을 모니터하고 동기부여자로서 역할
 - 간단한 행정업무 수행
- 책임
 - 참가 청소년에게 활동기록부 및 다른 자료 배부
 - 자기 지역의 활동지도자들과의 연락과 협조 활동
 - 참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협력자에 대한 기록 관리 유지
 - 참가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 보장
 - Award의 획득, 인정 및 발표 판장

3. 포상 구조

1) 개요

- 3단계의 성취수준이 있음(동상 : 초급단계, 은상 : 중급단계, 금상 :

1) 고급단계)

- 각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임
-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2) 동상(초급단계)

- 대상 : 14세이상의 청소년
- 동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참여기간 : 6개월

3) 은상(중급단계)

- 대상 : 15세이상의 청소년
- 은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참여기간 : 12개월

4) 금상(고급단계)

- 대상 : 16세이상
- 금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참여기간 : 18개월

4. 프로그램

1) 개요

- 4가지 활동영역이 있음 : 봉사활동, 탐험 및 탐사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
- 각 단계별 과정을 이후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는 4영역별 활동의 최소한 기간을 이수해야 함
- 특별히 몇몇 국가에서는 금상(고급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체합숙활동(residential project)을 요구함

2) 봉사활동

- 목적

- 타인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터득
-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고양
- 정규적인 봉사활동 강조
- 지역사회 봉사
- 병원이나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
-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전문적인 훈련

- 지역사회봉사	- 동물보호	- 아동보호
- 가정보호	- 가정안전관리	- 위생
- 산업안전관리	- 도로안전	- 환경보호
- 오염방지	- 응급처치	- 소방훈련
- 치안봉사	- 인명구조	- 장애인돕기

3) 탐험 및 탐사활동

- 목적 : 탐험과 발견정신 배양, 환경과 협동정신의 중요성 이해
- 도보, 자전거, 배, 승마 등 탐험여행

- 자전거탐험	- 보우트탐험	- 카누탐험
- 승마탐험	- 모터사이클탐험	- 자동차탐험
- 스키탐험	- 도보탐험	- 탐사

4) 취미활동

- 목적 : 개인적 흥미 진작과 문화적, 직업적 혹은 실질적 기능 배양
- 200여 가지의 공인된 기술 : 예술, 기술, 체스, 컴퓨터, 음악, 사진 등
- 일정 기간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반적 발전을 지향
- 구체적인 수준의 획득을 요구하지 않음

- 스포츠활동	- 자연체험활동	- 제작활동
- 예술활동	- 학술관련활동	- 기타취미활동

5) 사회·체육활동

- 목적 : 육체적 건강 진작
- 모든 스포츠 활동 포함

- 타인과 나
 - * 예절과 관습 * 자기관리 * 친구시귀기 * 돈과 사람
- 가정과 나
 - * 주택설계 * 꽃가꾸기 * 식사관리 * 정원가꾸기
 - * 가사일돕기 * 가정관리 * 수선과 관리 * 방문객 접대하는 법
- 지역사회와 나
 - * 직업 * 의회제도 * 사회봉사 * 일과 나 * 지역사회와 가정
- 현대사회와 나
 - * 보호운동 * 소비자활동 * 환각제 사용 * 민주주의 생활양식
 - * 집단감수성훈련 * 남녀평등 * 지구촌사람들 * 가정설계
 - * 노인을 위하여 * 효과적인 의사전달법
- 체력단련활동
 - * 기초기능훈련 * 육상경기 * 수영 * 팀스포츠 * 개인스포츠

6) 단체합숙 활동(residential project)

- 내용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공동체 정신함양 및 경험의 폭을 넓힘
- 기간 : 5일간
- 금상을 받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5. 참여 및 보상

1) 활동 참가

- 보상보다는 도전의 의미가 강함

- 참여청소년은 누구나 NAA나 IO로부터 기록부(record book)를 받음
- 프로그램의 참여는 기록부를 받고 지도자와 상의하여 4가지 영역(금상은 5가지 영역)에 대한 도전 수준을 상의함으로써 시작됨
- 각 영역별 활동에 있어 관련활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감독하며 안내할 성인 지도자를 필요로 함
-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 청소년의 활동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는 때때로 성인지도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외적 준거에 의해서 보다는 개인의 진전상황과 활동에 대한 참여와 애착 등으로 이루어짐
- 4영역에 대한 활동이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지도자는 상에 대한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됨

2) 활동 및 인정

- 청소년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단계의 활동을 지역에 있는 Award Unit에 신청한 후 자신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동상의 경우 봉사활동 중 동물보호, 탐험 및 탐사활동 중 자전거, 취미활동 중 피아노, 사회·체육활동 중 수영)을 선택하게 됨
- 선택한 활동과 관련된 Award Leaders를 소개받고 그와 연계된 강사, 평가자, 기록유지자 등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을 실시함
- 청소년이 수행한 활동 결과에 대하여 참가한 지도자나, 강사 등이 평가하여 활동 내용을 활동기록부에 기록하고 평가자가 이를 인정하며, 이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유지자는 한 청소년의 기록을 정리함
- 이러한 기록이 포상계획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시간내에 그 활동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면 청소년에게 뺏지 등을 제공하여 포상함

3) 보상

- 참여자에 대한 최대의 보상은 개인의 성취임

- 개인은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고 체험을 하게 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단계별 활동을 이수한 뗏지와 마크를 부여받게 됨
-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가치있는 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됨

6. 경비

- Award 프로그램은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어떤 프로그램은 적지않은 경비를 요함
-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활동기록부를 구입하여야 함 : 활동기록부의 구입은 참여의식을 부여함. 활동기록부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참가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지불할 수도 있음
-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은 재료비나 교통비 등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참가 경비가 부담이 될 경우 활동그룹은 집단별로 공동경비 부담을 위해 또는 장비구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7. 참여 국가

1) National Award Authority

- 49개국이 참여하며 국가적으로 정부나 사회(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포상의 이름은 국가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정하며,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개발할 수 있음

포 상 의 명 칭	참 가 국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오스트렐리아, 바베이도스, 버뮤다, 캐나다, 케이먼 섬, 도미니카, 포크랜드 섬, 피지, 지브롤타, 그레나다, 홍콩, 자메이카, 몽세랄, 뉴질랜드, 파키스탄, 세인트 헬레나 독립국, 세인트 루치아, 세인트 빈센트, 솔로몬 제도, 영국(20개국)
The President's Award	감비아, 아일랜드 공화국, 케냐, 말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9개국)
The Congressional Award	미국(1개국)
The Crown Prince Award	요르단(1개국)
The Governor General's Award	바하마(1개국)
The Head of State Award	가나(1개국)
The International Award for Young People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인도(1개국)
The National Youth Award	모리티, 시에라 레온, 스리랑카(3개국)
The National Youth Achievement Award	싱가포르(1개국)
The Namibia Youth Award	남미비아(1개국)
Le Merite International de la Jeunesse	벨기에, 베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스, 코티 디아브르, 가봉, 기니아, 세네갈(9개국)
The Nigerian National Youth Award	나이지리아(1개국)
Premio infante D'Henrique	포르투갈(1개국)
The Prince Mohato Award	레소토(1개국)
The Source of the Nile Award	우간다(1개국)

포 상 의 명 칭	참 가 국
Ordre National du Merite de la Jeunesse	카메룬(1개국)
The Benelux Award	네덜란드(1개국)
Adikarsa Nugraha Cestita	인도네시아(1개국)
The Israel Youth Award	이스라엘(1개국)
Anugerah Remaja Perdana	말레이시아(1개국)
The Prince Makhosini Award	스위스(1개국)
Merite jeunesse Benelux	룩셈부르크(1개국)

2) Independent Operator

- 3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전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음

안티구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바레인, 브라질,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씨프러스, 체코,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마다가스카, 노르웨이, 페루,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셀레스, 스페인, 스리랑카, 오만, 스위스, 탄자니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미국, 잠비아

참 고 자 료

- 강아장(1996), “생활권수련시설 활용도 제도 방안”, 문화체육부,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종합결과 보고서, 1996.11.20-21.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Ⅰ),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권복순(1996), “생활권수련시설 활용도 제도 방안(2)”, 문화체육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종합결과 보고서, 1996.11.20-21.
-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엄지용 (1994), “청소년야외수련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식(1997),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양평국제수련원, 계간 21세기 청소년, 창간호.
- 우상일(1996),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문화체육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종합결과 보고서, 1996.11.20-21.
- 이광호 외(1996), 청소년 수련활동 수요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지석환(1996), “자연권수련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2)”, 문화체육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종합결과 보고서, 1996.11.20-21.
- 한국청소년연구소(1988), 국민학교 학생의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소.
- 한승희 외 (1994),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기본계획(Ⅰ),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병수 외(1991), 청소년관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